

# 한국 · 일본 · 중국 연구교류 추진에 관한 각서

2017년 10월 27일

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

이사장 彭華民

일본사회복지학회회장 岩崎晋也

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Lee Bong Joo

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, 일본사회복지학회, 한국사회복지학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교류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하의 사항에 합의한다.

## 1. 공동연구의 추진

- (1)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3 학회는 공동연구의 기획에 대하여 협의할 자리를 마련한다.
- (2) 3 학회는 각각 담당자를 정하여 담당자의 의견교환을 토대로 공동연구기획의 구체안을 정리하고 각각의 학회 이사회에 제안, 합의를 얻어 기획 실시를 도모하도록 한다.

## 2. 학술연구대회의 대표자 초대

- (1) 학술연구대회에서 3 년에 한번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표자를 초대한다.
- (2) 3 학회는 다음과 같이 초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는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전국대회에 한국사회복지학회, 일본사회복지학회가 추천한 대표를 3 명씩 초청하도록 한다. 일본사회복지학회는 일본사회복지학회추계대회에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,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추천한 대표를 3 명씩 초청하도록 한다. 한국사회복지학회는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에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, 일본사회복지학회가 추천한 대표를 3 명씩 초청하도록 한다.
- (3) 초청하는 측의 학회는 대표자가 대회에서 연구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획을 준비하도록 노력한다.
- (4) 대표자의 여비(출발지부터 대회개최지(공항·역)까지 교통비)는 초청받은 측에서 부담하며, 대회 당일 및 전박을 포함한 전체 일정의 숙박 및 현지 교통비 등의 모든 체재비용은 초청하는 측의 학회가 부담한다.
- (5)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국학회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3. 개인연구발표

- (1) 3 학회의 추천으로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전국대회 및 일본사회복지학회추계대회,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원칙상 각 국가가 5 팀까지 개인연구발표를 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한다. 또한, 1 팀당 2 명까지 학회 참가비를 면제하도록 한다.
- (2) 개인연구발표의 제 1 발표자는 추천하는 학회의 정회원(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)이어야 한다. 단, 공동연구자는 3 학회 중 한 학회의 정회원(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)일 경우 인정하도록 한다.
- (3)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자가 준비한다.

## 4. 본 각서의 기한 및 개폐

- (1) 본 각서의 유효기한은 조인한 날부터 3 년간으로 한다. 다만, 3 학회의 합의에 따라 유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(2) 3 학회 중 한 쪽이 본 각서의 개정 혹은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, 3 학회의 합의에 근거하여 개정 혹은 폐기할 수 있다.

## 부칙

3 개국의 공동연구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상기 3. 개인연구발표이외에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전국대회 및 일본사회복지학회추계대회,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공동연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. 공동연구발표 제 1 발표자는 개최학회정회원(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)이어야 한다. 공동연구자는 3 학회 중 한 학회의 정회원(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)일 경우 인정하도록 한다.